

목포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3년 6월 27일
- 나. 제안자 : 황 정 호 의원 외 8인
- 다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27일
- 라. 상정일자 : 2003년 7월 7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- 제22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: 전 성 룡 의원

나. 개정이유

- 목포시의회의 원만한 회기 운영과 의원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는 물론 목포시가 회기 전 충분한 안건준비를 통하여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.(안 제19조의2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위원회 활동

-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(2003. 7. 7)
 - 전성룡 의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, 안건검토 및 심사결정

5. 토론요지

- 정례회 및 임시회에 따른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, 그리고 전문위원과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 준비를 위하여 의안 제출시기는 본회의 개의 7일전,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【원안 가결】